

2021년 수원상공회의소 온라인 일자리 사업설명회



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 및 운영안내

-청년대상-

2021. 03. 10(수) 수원상공회의소



목 차

1. [청년]가입자격 확인사항
2. [기업]가입자격 확인사항
3. 청약정보변경에 따른 조치사항
4. 청약운영관리 안내



1. [청년]가입자격 확인사항



1. [청년]가입자격 확인사항

연령 :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(군필자 만39세 한정)

청년 참여자격 확인사항

① 최종학력

- 학력 : 검정고시 [] 고등학교 [] 대학 [] 대학교 [] 기타 []
- 형태 : 졸업 [] 졸업예정 [] 수료(졸업유예) [] 재학 중 [] 휴학 []
- 유형1: 주간 [] 야간 [] 재직자과정 [] 사내학교 [] 기타 []
- 유형2: 방송통신 [] 사이버대학 [] 학점은행제 [] 해당없음 [] * 석사졸업 이상자는 학사졸업으로 체크

(시행지침3p, 4p)

[기본가입자격]

- ②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

*방송·통신·방송통신·사이버(원격대학), 학점은행제, 야간대학, 대학원은 제외

- A기업 19.1.1~20.3.31(15개월)
- B기업 20.5.1(정규직 입사) *최종학교 졸업(20.02.19)
 - 고등학교, 주간대학 졸업 → 적격
 - 야간대학, 원격대학, 계약학과 등 졸업 → 부적격

[고등학교/대학 재학중인자 허용범위]

- 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(마지막 학기직전 방학 포함) 중인 졸업예정자(수료자)

-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

단,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'현장실습 선도기업'에는 수업일수 2/3 출석 이후 취업 가능

[대학 재학중인 자]

- 졸업예정일 : 21.2.19
 - 20년여름방학시작일 : 20.8.1
- * 방학기간 확인 : 학사일정

정규직입사일

- 20.8.1이후 → 적격
- 20.8.1이전 → 부적격

[고등학교 재학중인 자]

- 졸업예정일 : 21.2.19
- 선도기업확정일 : 20.10.1
- 출석일2/3기준일: 20.10.1

정규직입사일

- 20.10.1이후 → 적격
- 20.10.1이전 → 부적격



1. [청년]가입자격 확인사항

청년 참여자격 확인사항

② 고용보험이력

① 의 최종학력 졸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초과 [] 이하 []

↳ '초과'일 경우, 최종 고용보험 상실일로부터 정규직취업일 이전까지 실직기간 6개월 이상 [] 미만 []

↳ '이상'인 경우 실직기간 동안의 근무여부 일용(아르바이트) [] 사업소득(3.3%) [] 해당없음[]

• 총 12개월이란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 (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)

(시행지침 3p, 6p)

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

③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

*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,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

* 고용보험산정일 제외 : 고용보험 3개월 이하

○ A기업근무 19.1.1~20.3.31(15개월) [실직기간 20.4.1~20.4.30(1개월)]

○ B기업근무 20.5.1~7.31(3개월) [실직기간 20.8.1~20.12.31(5개월)]

→ 실직기간 중 일용근무 20.8.1~20.10.31(3개월)

○ C기업입사 21. 1. 1(정규직)

- 일용근무(x) 6개월실직 → 적격
- 일용근무(o) 3개월실직 → 부적격



1. [청년]가입자격 확인사항

청년 참여자격 확인사항

③ 근로(연봉)계약 조건

- 정규직 입사 전 채용(예정) 기업에서 근무이력 있음 [] 없음 []
↳ '있음'의 경우 일용직 근무 [] 자유직업소득(프리랜서) 근무 [] 계약직 근무 [] 기타 근무 [예시)정규직]
- 정규직으로 입사 후 수습기간 있음 [] 없음 []
↳ '있음'의 경우 수습기간 중 임금이 최저임금 100% 기준적합 예 [] 아니오 []
↳ '있음'의 경우 3개월 초과의 수습기간 있음 [] 없음 []

(시행지침 2p, 8p)

[기본가입자격]

1) 급여수준

당해 연도 최저임금 이상 *「최저임금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라,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에 해당되는 임금을 말함
* 2021년 최저임금 : 1,822,480원 (산입범위 : 정기상여15%(273,372원), 복리후생3%(54,674원) 초과분 산입)

2) 자체 수습기간 운영

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에 대해 자체 수습기간을 운영하는 경우

* 청년공제 가입 시점은 정규직채용일(=수습 시작일)

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 최저임금 100% 이상 지급. 단, 월 고정 임금총액을 최저임금 이상 지급 시 가입 허용

[가입제한자]

⑤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

* '재직 중인 자' 또는 '신규 입사자이나 이미 청약 신청기한이 도과된 자'

* 취업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(프리랜서)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는
이미 근무 중인 자에 포함



1. [청년]가입자격 확인사항

청년 참여자격 확인사항

③ 근로(연봉)계약 조건

- 정규직 입사 후 근무장소 채용기업주소지 본사[] 지사(지점)[] 재택근무[] 해외근무[] 현장근무[]
↳ 현장근무의 경우 출퇴근관리 있음[] 없음[]
-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[] 미만[]
-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적합 예[] 아니오[]
- 월 급여총액이 월 350만원(연봉4,200만원) 초과 예상 예[] 아니오[]

↳ '아니오'의 경우에도 정규직 입사 후 1년간 월급여 총액350만원(연봉4,200만원)초과시 청약철회 됨을 안내 받았습니다.

성명 : (서명)

(시행지침 5p, 8p)

[가입 제외자]

- ⑥ 월 급여총액*이 350만원 초과한 자
 - *(가입 전) 기본급, 각종 제수당(고정급) 포함
 - *(가입 후) 기본급, 각종 제수당(변동급) 모두 포함
성과급을 모두 포함하며, 정규직 입사일(전환일)로부터 1년간 유지
 - ** 1년간 지급총액이 4,200만원 초과 시 청약철회
- ⑦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
 - *(가입 후)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주 30시간 미만 시 중도해지
- ⑧ 재택 근무자

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일시적 필요 또는 유연근무로 재택근무 활용은 가능.

다만,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기본 근무형태를 재택근무로 변경하는 경우는 중도해지 될 수 있음.

[가입 제한자]

- ⑥ 국내기업의 해외법인(또는 해외지사)의 근무(예정)자로 채용된 자
- ⑦ 근무시간,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·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
 - (예) 다단계 회사, 보험회사, 제약회사, 물류도매업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중 영업직으로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출·퇴근 관리를 받지 않는 자



1. [청년]가입자격 확인사항

청년 참여자격 확인사항

④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생애최초 가입자 예 [] 아니오 []

↳ '아니오'일 경우,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*사업주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되어
6개월 이내 재취업한 자 예 [] 아니오 []

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예 [] 아니오 []

*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가입 가능.

(시행지침 5p, 28p)

[재가입]

가. 청년공제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

- 1)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(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)
- 2)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

[재가입이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]

휴·폐업, 도산,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, 임금체불, 고용보험료 체납,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, 직장 내 괴롭힘,
직장 내 성희롱, 권고사직

나. 퇴사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(1회에 한함)

단,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정부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

※ 재가입시 공제 가입기간은 신규가입과 동일한 기간으로 가입일로부터 새롭게 시작함

※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재취업기간 연장

- 21.1월 ~ 6월 재가입을 위한 재취업 6개월 기간 만료되는 청년의 경우 추가로 최대 6개월 연장

[가입제외자]

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
- 다만,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가입 가능



1. [청년]가입자격 확인사항

청년 참여자격 확인사항	(시행지침 5p, 9p, 10p)
⑥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예 [] 아니오 [] ↳'예'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임대업인 경우 예 [] 아니오 []	<p>[가입제외자]</p> <p>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<p>*(가입 후)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시 중도해지</p>
⑦ 사업주(대표)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관계 예 [] 아니오 []	<p>[가입제한자]</p> <p>② 사업주(법인은 대표이사)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 관계에 있는 자</p> <p>*청년공제 가입 이후 혼인 등으로 관계 변동이 생긴 경우, 배우자는 혼인 일자를 기준으로 중도해지, 4촌 이내는 피보험 자격 여부에 따라 자격 유지 여부 판단</p>
⑧ 산업기능요원, 전문연구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의무복무 복무예정 [] 해당없음 []	<p>[가입제한자 중 예외적 가입 허용]</p> <p>①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종료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가입 기준) 병역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다가, 복무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(사업주 단위)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- (청년공제 가입) 복무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
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(희망사다리) 수혜자 의무종사기간 종료 [] 의무종사기간 진행 중 [] 해당없음 []	<p>[가입제한자 중 예외적 가입 허용]</p> <p>②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(희망사다리 I) 수혜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가입 기준)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(희망사다리 I)(교육부 사업) 수혜자로서, 의무종사기간(장학금수혜횟수×6개월, 최대 3년) 종료 후 동일 기업(사업주 단위)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- (청년공제 가입)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- (참고)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(희망사다리 II)은 중복가입 가능
⑩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의무종사기간 종료 [] 의무종사기간 진행 중 [] 해당없음 []	<p>[가입제한자 중 예외적 가입 허용]</p> <p>③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가입 기준)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(교육부 사업) 수혜자로서, 의무종사기간*종료 후 동일 기업(사업주 단위)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- (청년공제 가입)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



1. [청년]가입자격 확인사항

청년 참여자격 확인사항

⑪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'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' 또는 '자산형성 지원사업' 각종 통장사업

참여 중 []

↳ '17년부터[], '18년이후부터[]

참여했었음 []

↳ '17년부터[], '18년이후부터[]

해당없음 []

(시행지침 8p)

[가입 제한자]

⑧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에 중복 참여한 자

- [20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-자치단체 합동지침]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*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

*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및 일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

* 단, 행정안전부의 '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'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(전환)되어 가입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

- 청년공제와 지원대상, 목적,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*에 참여중인 자, 또는 2018년 이후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

예) 서울시의 '희망두배 청년통장', 보건복지부의 '청년저축계좌' 및 '청년희망 키움통장', 경기도의 '일하는 청년통장' 시리즈 등 각종 통장사업

-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한 자



2. [기업]가입자격 확인사항



2. [기업]가입자격 확인사항

기업 참여자격 확인사항

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

▪ 청년공제 가입(예정) 청년 정규직 입사일 당시 5인 미만 [] 초과 []

↳ 5인 미만일 경우 벤처기업 [] 중기부 지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[] 경영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 []
청년창업기업 [] 기타 []

(시행지침 13p)

[기본가입자격]

가. 청년공제 가입(예정)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,

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*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** 또는 중견기업***

*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, 사업주, 일용근로자, 청년공제 가입 예정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



3. 청약정보 변경에 따른 조치사항



3. 청약정보 변경에 따른 조치사항

[청약철회 23p]

1) 월 급여총액 350만원(연봉4,200만원) 초과의 경우

- 정규직 입사일로부터 1년간 유지조건

2) 청약가입 전 기업·청년이 작성한 확인서를 토대로 선발요건이 충족되어 청약이 가입 되었으나 청약가입 후 사실과 다른 조건이 확인되었거나 기타 선발요건 불충분 사유가 발생되어 청약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

<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상 벌칙규정 >

-청년공제 참여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해당-

- 제40조(벌칙):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41조(벌칙):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1.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
 2.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



3. 청약정보 변경에 따른 조치사항

[중도해지 25p~27p]

- 1) 실시기업에서 퇴사할 경우
- 2) 근로계약의 변동으로 재택근무, 주 30시간 미만 근무 등 참여자격 요건에 미달 될 경우
- 3) 청약가입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
- 4) 청약가입 기간 중 사업주와 4촌이내 혈족관계로 변동이 생긴 경우
- 5) 본인부담금 6회차 이상 미납일 경우**
- 6) 기업에서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이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
- 7) 실시기업의 규모가 중소·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전환될 경우
- 8) 실시기업의 폐업 등으로 더 이상 고용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
- 9) 실시기업의 임금체불, 고용보험 체납,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등으로 근로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등
- 10) 청년 변심에 의한 경우

[참고] 중도해지 환급금 (참여연도: 2021년)

[단위:천원]

청약승인일로 부터 근무기간		1월이상~6월미만	6월이상~12월미만	12월이상~18월미만	18월이상~24월미만		
정부 지원	청년귀책	0	0	1,600	2,300		
	기업귀책	200	500				
기업지원		전액환수					
자기부담		납부누계액 및 이자					

* 2년(3년)이상 근무자 중 마지막 회차 미적립자의 환급금 처리

* 사업주 귀책사유로 마지막 회차 미적립 상태에서 청년이 환급금을 희망

- 환급기준: 자기부담금 + 정부지원금만 수령 / 기업지원금은 전액 국가로 환수



3. 청약정보 변경에 따른 조치사항

[납부유예(납입중지) 24p]

사 유	납부유예기간
1. 병역의무(산업기능요원,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) 이행 2. 육아휴직,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(단,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) 3. 기타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	해당기간
1. 사업장 내 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(유)급 휴직 2.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(유)급 휴업 (주 30시간 미만 근무시간 단축 포함) 3. 개인질병 4. 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'천재지변' 또는 '사고'로 인정받은 경우	12개월까지
1. 업무상 재해	24개월까지

- 코로나19관련 회사규칙 휴직·휴업의 납부유예기간연장 납입중지 허용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중도해지 하여야 하나,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해당기간을 초과하였더라도 공제 유지
→ 단, 최대 연장시점(만료시점)은 '21.12.31.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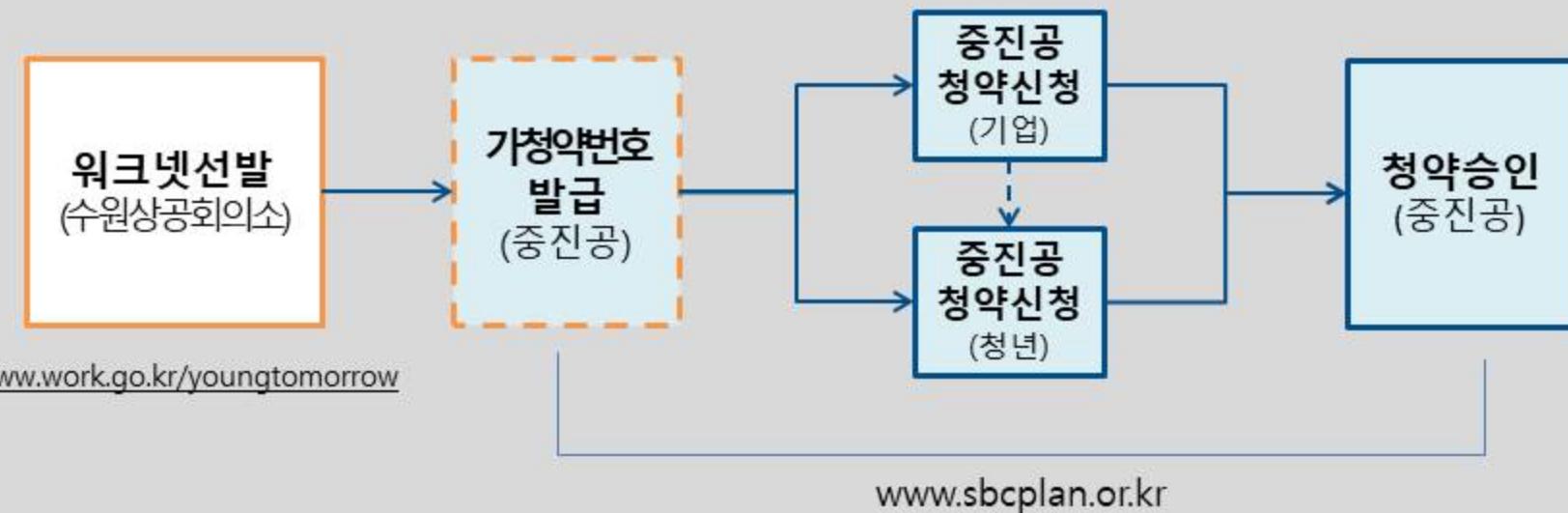


4. 청약운영관리 안내

[주관: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중진공)] www.sbcplan.or.kr



1. 청약 신청 및 승인



- 선발 **익일부터** 청약신청 가능하며, **기업 → 청년** 순으로만 신청 가능
- 안내 SMS 발송(청약신청 가능, 기업신청완료, 최종제출완료 등 총 3회)
-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**15영업일** 이내 승인



2. 공제부금 적립 등

<청년공제 적립구조>

1



근로자 계좌 자동이체로 적립(5, 15, 25일 중 선택)

월 12.5만원 24개월 납입

2년간 300만원



기업 명의 가상계좌로 적립(기간별 적립)

50 60 60 60 70

2년간 300만원



근로자 명의 가상계좌로 적립(기간별 적립)

80 120 120 140 140

2년간 600만원

2

적립 주기

적립 주기	1차	2차	3차	4차	5차
기업 납입 (적립)금 (누적금액)	50만원 (50만원)	60만원 (110만원)	60만원 (170만원)	60만원 (230만원)	70만원 (300만원)
정부지원 (적립)금 (누적금액)	80만원 (80만원)	120만원 (200만원)	120만원 (320만원)	140만원 (460만원)	140만원 (600만원)

청년내일
채움공제

1,200만원

1

- 청년의 본인납입금은 **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** 24개월($125,000\text{원} \times 24\text{개월}$) = 3,000,000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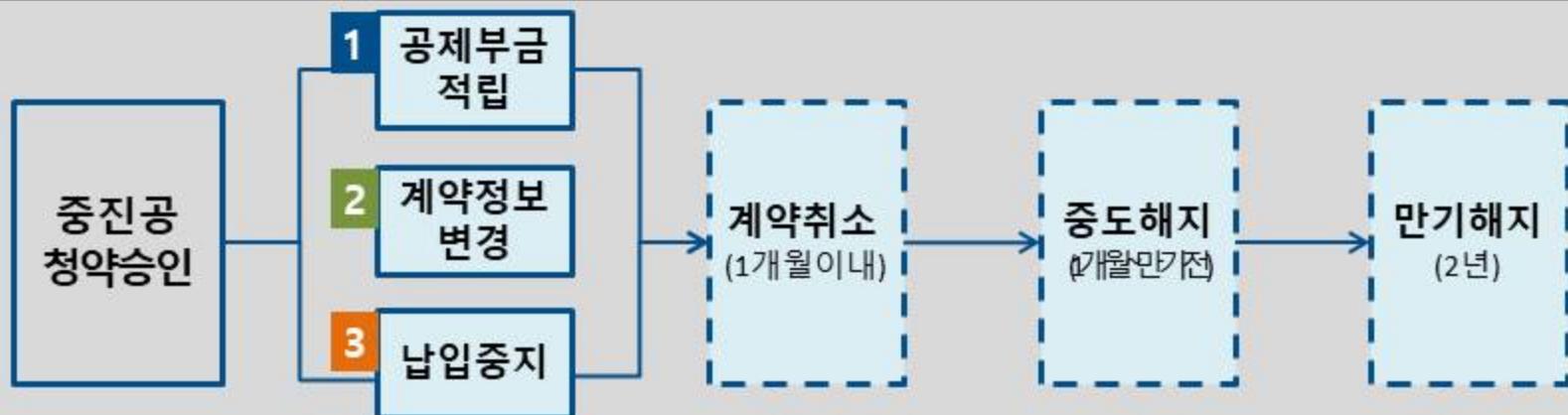
2

- 기업/정부지원금은 **기업에서 근속관리를 통한 회차별 신청** 24개월(2년)간 5회 = 9,000,000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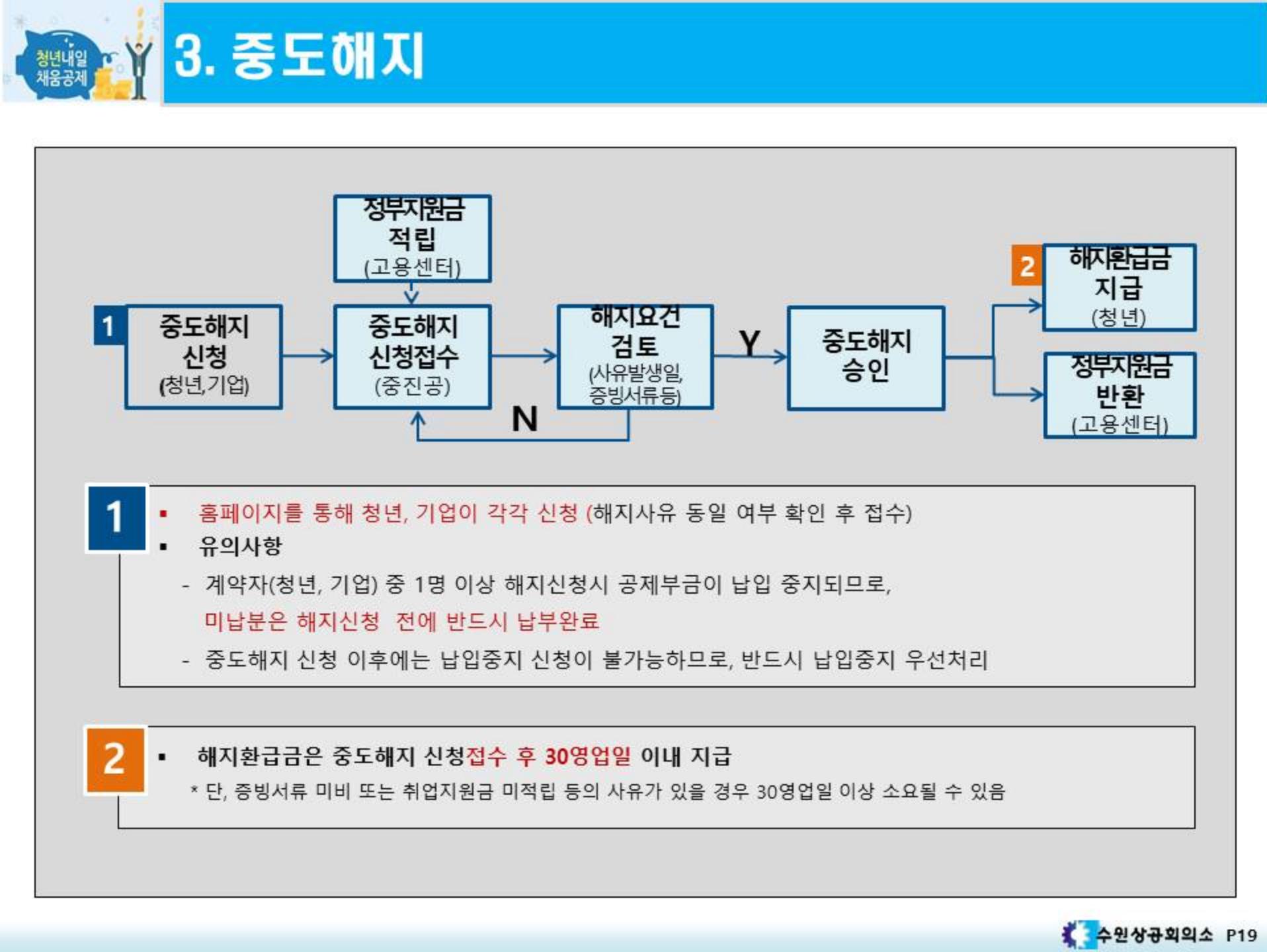
2년 만기금 12,000,000원



2. 공제부금 적립 등



- 1**
 - 청년의 본인납입금은 지정한 납부일(5일, 15일, 25일 中 선택)에 **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** 처리되며, 자동 이체 지정일을 포함하여 최대 3회까지 이체시도
 - * 지정 납부일이 매월 15일인 경우, 당월 25일 및 익월 5일까지 자동청구
 - 총 3회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공제 부금은 미납 처리 되며, 미납공제금은 **홈페이지를 통해 납입기일을 별도로 지정해야** 납부 가능
 - 미납금 납부는 청년(핵심인력) 본인명의의 계좌로 자동이체 방식으로만 가능
- 2**
 - 청년 개명, 단순 사업장 정보 변경(상호, 대표자명, 소재지 등)시 기업 및 청년이 **워크넷(www.work.go.kr)**, **증진공(www.sbcplan.or.kr)** 홈페이지에 직접 회원정보 변경 실시
 - * 워크넷 홈페이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신청 홈페이지가 아닌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변경
 - 운영기관 제출서류: 기업=사업자등록증, 핵심인력=주민증록 초본
- 3**
 - 납입중지 신청 후 서류 미비로 승인이 보류될 경우 청년에게 문자 발송





4. 만기 등 기타사항

만기해지

- 만기일** : 청약개시일로부터 24개월까지(○) / 청년개인납부금 적립완료일(x)
- 만기금 수령기간** : 마지막 회차 지원금 신청서 접수(만기달 급여수령 후) 후 약 1개월
- 만기 지급이율**
 - 매 분기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(www.sbcplan.or.kr) 공시자료에 게시
 - 적용기준 : 계약성립일 ~ **사유발생일까지는 연복리**, 사유발생일 **이후부터는 단리** 적용
 - 최종 이자지급액은 공제부금 납부일 및 정부지원금 적립시기에 따라 상이

연계가입

- 청년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(5년형)에 가입하는 경우, 연계가입에 해당
- 청년공제 마지막 정부지원금 적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
- 연계가입시 내일채움공제(5년형) 약관에 따름
- 문의전화 : 031-244-3454

 수원상공회의소 P20



사업참여 하신 모든 청년분들의 만기금 수령을 기대합니다.

수원상공회의소 일자리지원팀 (TEL)031-244-3454